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예수리시설감지원 제도 신설〉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14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 신설	3
가. 관계기관 의견	4
나. 수리시설감시원 제도 현황	4
다. 검토의견	11
1)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의 근거 마련(제1항)	13
2)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의무(제2항)	21
3)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의무(제3항)	23
4) 제도 관련 사항의 정관 위임(제4항)	26
2. 부칙(시행일)	31
※ 참고자료	
[참고1] 수리시설 소개	32
[참고2] 수리시설감시원 활동사진	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 신설

개정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지역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 <u>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를 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 구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이 농업기반시설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주로 임시적·보조적·상징적인 역할의 ‘명예’라는 용어로 인하여 법적 보호의 정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17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와 위험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역시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 관련 조치를 대통령령이 아닌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수리시설감시원 제도 현황

현재 공사¹⁾는 공사의 지침인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물과 수혜면적을 관리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수리시설감시원은 2024년 기준 7,338명이고, 평균연령은 64세로서 특히 70세 이상이 3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운영지침」에서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요건을 70세 이하로 규정하나, 실제로는 70세 이상 수리시설감시원이 존재하여 「운영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음.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 현황 >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 * 안전관리: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요업무	- 물 관리(급·배수), 시설물의 점검·조작, 환경 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운영인원	- ('21) 7,462명 → ('22) 7,382명 → ('23) 7,401명 → ('24) 7,338명
자격요건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 제6조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 19세이상 70세 이하
선발절차	- 도급계약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도급계약
처우	- 기간/금액: 급수기간 중(6개월 이내), 월 평균 782천원('24년 기준) - 보험가입 여부: 4대보험 미가입 / 단체상해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 사고 발생시 보상절차: 수리시설감시원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 2024년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인원 현황 >

구 분	총원						비고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배수문(기타)	
인원(명)	7,338	1,109	1,734	312	4,114	69	-평균연령: 64세 -70세이상 30%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1. 16.

수리시설감시원은 영농기(4월~9월)에 한시적으로 농업용수 관리, 시설물의 점검·조작, 환경 감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시설물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율을 측정하거나 양·배수장의 가동 전·후 점검을 수행하거나 용·배수로의 적정수위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수리시설감시원 주요 업무 >

시설물	주요 업무
저수지	- 저수율 측정 및 통보, 통수 및 통수량 조절, 주요 구조물 예찰 등
양·배수장	- 급수계획에 따른 가동, 가동 전·후 점검 등
용·배수로	- 노선 및 부속시설 예찰, 문비 조작 및 적정수위 유지 등
취입보	- 통수계획에 따른 취수문, 배사문, 권양기 조작 및 이상여부 예찰 등
배수문	- 협의에 따른 문비조작, 주변 예찰, 피해 예상 시 통보 등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관리부 연구용역, 2025. 1. 16.

수리시설감시원의 1인당 활동 일수는 2023년 기준 168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 활동에 따른 1인당 연간 활동비 지급액은 450만원 수준임.

< 수리시설감시원 평균 활동일수 및 활동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1인당 연간 평균 활동 일수	총 활동일(A, 일)	1,246,154	1,173,738	1,243,368	1,221,087
	총 인원수(B, 명)	7,462	7,382	7,401	7,415
	평균 활동일 (C=A/B, 일/명)	167	159	168	165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1인당 연간 활동비	총 지급액 (A, 백만원)	30,765	32,135	33,791	32,230
평균 지급액	총 인원 수(B, 명)	7,462	7,382	7,401	7,415
	평균 지급액 (C=A/B, 백만원/명)	4.1	4.3	4.5	4.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현재 수리시설감시원은 공사(지사장·사업단장)와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하여 2000년까지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였고, 2003년에 계약 방식을 ‘위촉’ 형태로 일원화 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수리시설 감시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계약 방식을 위촉에서 ‘도급’ 형태로 변경하였음.

< 수리시설감시원 호칭 및 계약방식 연혁 >

시기	연혁
1908년 ~ 2000년	- 농지개량조합하에서의 조합원 지위 * 2000년 노동부에 대한 근로자 여부 질의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답변
2003년	- 계약 방식 일원화(임명, 임용, 일용인부 등 → 위촉) * 호칭 통일(계절인부, 감시원, 수로원, 기관원 → 수리시설관리원)
2008년	- 호칭 변경(→ 계절직)
2016년	- 호칭 변경(→ 수리시설감시원)
2020년	- 계약 방식 변경(위촉 → 도급) * 위촉: 위촉장 수여, 업무범위 불명확 * 도급: 계약 체결, 도급 업무 위탁내역서 작성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관리부 연구용역, 2025. 1. 16. (일부 재가공)

계약 방식에 있어 기존의 위촉 계약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일을 맡길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반면, 현재의 도급 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임.

< 계약방식별 비교 >

연번	계약방식	주요 내용
1	위촉계약	-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맡기고 요청하는 것 -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인 일을 맡길 때 주로 사용
	위임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 수리시설감시원 제도의 운영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의 고유 관리 등 업무로서, 「민법」상 위임(제680조~제689조)에 해당함
2	도급계약	-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제674조) *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의무를, 도급인은 보수지급 의무를 가짐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정의에 ‘일의 완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관리부 연구용역, 2025. 1. 16. (일부 재가공)

현재 수리시설감시원 도급계약의 ① 범위, ② 상대방, ③ 절차, ④ 기간, ⑤ 종료 및 해지사유에 대하여는 공사의 「운영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운영지침」 상 수리시설감시원 도급계약 관련 사항 ＞

사항	주요 내용
도급계약 범위	- 물관리(급수, 배수) 활동 - 시설물의 점검, 조작 등의 활동 - 환경 감시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예찰활동 - 긴급 상황발생 시 대응 등 기타업무 - 도급업무 위탁내역서의 사항
도급계약 상대방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 1.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 2.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3.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 (※ 다만, 현재 감시원에는 70세 이상 인원이 존재하고 있음)
도급계약 절차	- 관할지역 내의 읍·면·동의 사무소 게시판 또는 마을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고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 * 위원장: 책임자(지사장·사업단장), 간사: 업무담당자 - 도급조건을 수리시설감시원에게 설명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
도급계약 기간	- 6개월 이내 도급기간 설정 - 다만, 시설물 관리 특성상 필요한 경우 6개월 미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
도급계약 종료 및 해지 사유	- 도급계약 종료 사유 1. 수리시설감시원의 사망 2. 도급기간 만료 - 도급계약 해지 사유 1. 수리시설감시원이 해지를 원할 때 2. 수리시설감시원에게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3. 질병 등으로 감시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불성실한 감시활동 수행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등의 지장 5. 시설물의 용도폐지 등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 6. 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의 위반 또는 이행소홀

※ 자료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2025. 1. 26.

참고로, 공사의 수리시설감시원 운영 관련 예산(도급액, 보험금 등)은 ‘수리시설 유지관리(4037-306)’ 사업을 통하여 편성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이 326억원에서 34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 관련 예결산 현황: 2023년 ~ 2025년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지원형태 (출연/보조/ 융자 등) 및 보조율(%)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수리시설 유지관리 (4037-306)	-	보조 100%	도급액(임금), 보험금	32,594	34,548	32,847	결산중	34,607
	소계			32,594	34,548	32,847	결산중	34,607
합계				32,594	34,548	32,847	결산중	34,607

※ 주: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내역사업이 없는 단일 세부사업으로, 수리시설감시원 운영 관련 예산을 시행계획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다. 검토의견

수리시설감시원은 급수기간 중에 물관리 활동,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

해당 업무는 업무기간 내에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등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인명사고가 있었음.³⁾

이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⁴⁾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들과 도급계

2)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한국농어촌공사 지침)

제4조(도급 분야 및 범위) ① 수리시설감시원의 도급분야는 시설물 감시와 관련하여 수원공, 용·배수로, 배수(갑)문, 공사관리지역 등을 감시하는 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한다.

② 수리시설물감시와 관련한 도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급수,배수 등)활동
2. 시설물의 점검, 조작 등의 활동
3. 환경 감시활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예찰 활동
4. 긴급 상황발생 시 대응 등 기타업무
5. 도급업무 위탁내역서의 사항

③ 수리시설감시원이 두 개 이상의 시설물을 감시할 경우 제2항에 따라 복합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3) KBS, “”폭우에 침수 막으려고 나섰는데... 위험 속 수리시설 감시원”, 2023. 6. 2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10836&ref=A>, 2025. 1. 7. 확인.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약 관계에 놓인 공사(사장)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공사의 내부지침인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어,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공사법」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에게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과 관련한 의무⁵⁾를 부여하며,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에게 안전 관련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5)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의무(안 제17조의2제2항),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안 제17조의2제3항)

개정안은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은 ①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의 근거 마련(제1항), ②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의무(제2항), ③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의무(제3항) 및 ④ 제도 관련 사항의 정관 위임(제4항)임.

1)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의 근거 마련(제1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소재지의 지역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안 제17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공사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에서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명예감시원⁶⁾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나 「양곡관리법」에 따른 명예감

6)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낙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낙시인 및 낙시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원⁷⁾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 등으로 사인(私人)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농해수위 소관 명예감시원 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례 >

부처	근거 법률	제도명	형태
농림 축산 식품부	양곡관리법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위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식물방역법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	명예가축방역 감시원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해양 수산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	명예감시원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48조	명예수산생물 방역감시원	
	소금산업 진흥법 제54조	명예감시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용수관리부 연구용역, 2025. 1. 16. (일부 재가공)

다만, 현행법은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⁸⁾ 현행법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양곡관리법」

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둘째, 개정안은 공사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관계를 ‘위촉’으로 규정하여 현재의 도급 방식에서 위촉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고 있음.

공사는 2020년에 수리시설감시원의 계약 방식을 위촉에서 도급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는 도급업무 위탁내역서 작성 등을 통하여 수리시설감시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

개정안은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그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 계약 방식을 위촉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 이를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소재지의 지역 주민 등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재 공사가 「운영지침」을 통하여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⁹⁾ 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기후·지리 등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을 명시한 것은 적절해 보임.

9)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지침」

제6조(도급계약 체결기준) ① 책임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수리시설감시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1. 지역실정을 잘 아는 자
2.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3. 만 19세 이상 만 70세 이하

넷째,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인 ‘수리시설감시원’이 아닌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사용하여 “명예”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유사 입법례에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사인(私人)을 위촉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의 명칭에 “명예”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수리시설감시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유사 입법례상의 명예감시원 제도 등과 달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의 영역이므로, 제도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운영 중인 감시원 제도 중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그 제도 명칭에 “명예”를 사용하지 않고 “감시원”으로만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음.

제도 명칭에서 “명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해당 입법례들의 취지는, “명예”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¹⁰⁾이므로, 감시원의 전문성 또는 책임이 간과될 수 있고, 법적 보호 또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2. 8. 확인

< 명칭에 “명예”를 붙이지 않는 감시원 제도 주요 입법례 >

소관 부처	근거 법률	제도명	법률상 수행업무	공무원 여부	결어
복지부 식약처	의료기기법 제40조	의료기기 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의료기기취급자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	○ (총리령)	둔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인체조직 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조직기증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조사 등	○ (법률)	둔다
	약사법 제78조	약사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	○ (법률)	둔다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비자 감시원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위촉 할 수 있다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등	○ (대통령령)	둔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6조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등	○ (대통령령)	둔다
	화장품법 제18조의2	소비자 화장품안전관 리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영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지원		위촉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 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중 영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	○ (대통령령)	둔다
외교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남극활동 감시원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조사		지명 할 수 있다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관계 공무원의 직무,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	○ (대통령령)	둔다
해수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수질감시원	해양심층수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	○ (대통령령)	둔다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8.

이 경우 감시원이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이는데, ①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와 ② 그 외의 업무임.

①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감시원 제도는 대체로 ‘위촉할 수 있다’ 등의 표현 대신, 특정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그 자격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안이 ‘둔다’가 아닌 ‘위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 현재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을 공무원도 공사 직원도 아닌 지역 주민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 제17조의2제1항도 지역 주민을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는 차이가 있음.

②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시원 제도인 소비자감시원,¹¹⁾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¹²⁾ 및 남극활동 감시원¹³⁾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자격으로 업무(계량, 화장품안전관리 및 남극)에 관련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비자감시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계량관리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소비자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2) 「화장품법」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따라서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가 그 수행에 있어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도 명칭 중 “명예”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관리 지역의 실정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지식으로 본다면, 제도의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하여 “감시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의 명예감시원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더 많은 수당을 받고, 더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그리고 현재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의 사기 진작 여부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안의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 명예감시원 제도와 수당 및 보험가입 여부 등 비교 >

구 분	수당 및 활동기간	보험가입 여부
수리시설감시원	월 평균금액 782천원 ¹⁴⁾ (1년 내 6개월 정도 활동)	단체상해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14) 수리시설감시원 수당지급 산정방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지급금액 = 월 지급금액×지급계약월 (단, 연간 지급금액 2,000만원이하/1인) ○ 월 지급금액 =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해당 년도 최저지급[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준용 - B : 월간 관리 시설물별 지급시간 |
|--|

구 분	수당 및 활동기간	보험가입 여부
「양곡관리법」 명예감시원	활동비 1회당 5~7만원 수준 (지급기준 없고 1년 내 10일 정도 활동)	보험 가입 없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명예감시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일부 재가공)

2)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의무(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 우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안 제17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는 지역별 수리시설감시원, 부서별 수리시설감시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수리시설감시원 안전보건교육 현황 >

☐ 교육대상

- 지역별 수리시설감시원, 부서별 수리시설감시원 담당자

☐ 교육내용

- 수리시설감시원의 역할
-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행동요령
 - 위험상황 시 행동요령,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등
- 안전사고 사례전파
- 시설물의 안전작동 방법
- 수리시설감시원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 사항

☐ 교육방법

- (1단계) 본사 집합교육 : 년 1회(2~3월), 감시원 도급 전
 - 교육 대상 : 지역본부·사업단·지사 수리시설감시원 담당자
- (2단계) 지사 및 사업단 자체교육 : 년 1회(3~4월), 감시원 도급 시
 - 교육 대상 : 도급계약 수리시설감시원
- (3단계) 지사 및 사업단 지구담당자교육(수시)
 - 교육 대상 : 담당구역 별 수리시설감시원

□ 교육사진



'24년 지역본부 순회교육



지사 및 사업단 자체교육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또한, 「운영지침」에서는 ‘운영 현황 점검표’를 통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도급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로서 안전보건교육에 사전 협의 없이 불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¹⁵⁾로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1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3) 적절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의무(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 ② (생 략) ③ 공사는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안 제17조의2제3항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두 가지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법제화에 따른 수리시설감시원 대상 보험 비교 >

구 분		현행(법제화 전)	법제화 후
보험가입		○ 민간보험가입(연간보험료 850백만원) - 단체상해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변동없음
보 장 내 용	단체 상해보험	○ 상해사망: 1억원 ○ 상해후유장해: 5,000만원 ○ 상해실손의료비(급여+비급여) : 입원 500만원 통원(외래+처방조제) 5만원 ○ 상해수술비: 3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과절제외): 30만원 ○ 상해입원일당: 2만원	변동없음

구 분		현행(법제화 전)	법제화 후
보 장 내 용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 재해보상 및 재해보상 확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 간병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금액 ○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2억원 / 1사고당 5억원	변동없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1. 6. (일부 재가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의무가 법제화되더라도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금액 등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공사에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도 특별히 공사의 재정·운영 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¹⁶⁾

다만, 공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공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개정안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면 명예수리시설감시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6)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정안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공사의 정관으로 규정한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적 운영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¹⁷⁾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예감시원 또는 감시원을 두는 제도에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 보임.

다만,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유사 입법례는 가입기간, 피보험자, 보험 종류, 보험의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위임규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14.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제도 관련 사항의 정관 위임(안 제17조의2제4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명예수리시설감시원)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17조의2제4항의 제도 관련 사항의 정관 위임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① 자격, ② 업무범위, ③ 위촉·해촉 절차, ④ 수당 지급, ⑤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위원회 소관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① 자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존재함.

② 업무범위(또는 임무)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③ 위촉절차(또는 방법)와 관련해서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다만, 해촉절차(또는 방법)와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예가 없음.

④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일부 입법례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다른 입법례는 수당 중 경비에 관하여만 법률 또는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⑤ 교육실시에 대하여는 유사 입법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과 농해수위 소관 명예감시원 제도 입법례의 위임규정 비교 >

부 처	제 도	위임사항							위임 형식	위촉 권자
		자격	업무 범위 (임무)	위촉	해촉	수당	경비	기타		
	개정안 명예수리시설감시원	○	○	○	○	○		○ (교육)	정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제27조의2 명예감시원 ¹⁸⁾	○	○	○		○			부령	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	○	○			법률		부령	장관
	식물방역법 제42조 명예 식물감시원	○	○	○			○		부령	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법률	○	○		○			부령	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	○			법률		부령	장관
공 동										
해 양 수 산 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 명예감시원	○	○	○			○	○ (증표)	부령	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법률	○	○		○			부령	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제54조 명예감시원	○	○	○			법률		부령	장관
산 림 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	○	○			법률		부령	청장

※ 주: 위임사항란의 ‘법률’은 해당 사항을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재가공, 2025. 1. 26.

18) 「양곡관리법」 제27조의제2항은 명예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예감시원 개인에 대한 보조가 아니므로 표에 기재하지 않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는 개정안과 달리 위임 형식을 부령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촉권자가 장관, 청장 등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경우 위촉권자가 공공기관인 공사이므로, 세부적인 제도 운영사항의 위임 형식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명예감시원”이 아닌 “감시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체로 ① 자격, ② 업무범위(또는 임무) 및 ③ 위촉(또는 지명, 임명 등)절차 또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당과 경비에 관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과 「화장품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만이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감시원 제도 입법례의 위임규정 비교 >

부 처	제 도	위임사항							위 임 형 식	위 촉 (지명) 권자
		자 격	업 무 범 위 (임무)	위 촉 (지명 /임명)	해 촉	수 당	경 비	기 타		
	개정안 명예수리시설감시원	○	○	○	○	○		○ (교육)	정관	공사
복 지 부 / 식 약 처	의료기기법 제40조 의료기기감시원	○	○	○					총리 령	장관, 청장, 지자체장
	약사법 제78조 약사감시원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인체조직 감시원	○	○	○						장관, 청장

부처	제도	위임사항							위임 형식	위촉 (지명) 권자
		자격	업무 범위 (임무)	위촉 (지명 /임명)	해촉	수당	경비	기타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비자감시원	법률	○	법률	법률		법률		부령	장관, 시도지사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마약류 감시원	○	○						대통령령	처장, 지자체장
	위생용품 관리법 제26조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	○	○						
	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	○	○						
	화장품법 제18조의2 소비자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	법률	법률	법률	△		○ (교육)	총리령	처장, 지방청장
외교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남극활동감시원	○	○	○					대통령령	장관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7조 먹는물 수질감시원	○	○	○					대통령령	장관, 지자체장
해수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수질감시원	○	○	○					대통령령	장관, 지자체장

※ 주1: 위임사항란의 ‘법률’은 해당 사항을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함

※ 주2: 음영 표시된 감시원 제도는 “공무원” 신분을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은 제도임

※ 주3: △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자료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재가공, 2025. 2. 9.

소비자감시원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는 공무원 신분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당 또는 경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개정안의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가 공사 직원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아 수당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함.

따라서 “명예감시원” 또는 “감시원” 제도의 유사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정안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위촉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촉(지명)권자와 위임형식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개정안에서 ‘정관’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2. 부칙(시행일)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수용 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정관에 마련해야 하므로, 그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1. 16.

1. 수원공 시설

□ 저수지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로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하며, 주위의 흙을 이용하여 만든 소류지(작은 규모의 저수지)를 포함하며, 제당, 여수토, 취수 시설 등으로 구성

□ 취수시설



<취수탑>



<공도교와 취수탑>



<취수탑 내부>



<사통과 조작실>



<사통 조작실 내부>



<복통>

저수지에 저류된 물을 관개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온, 수량을 취수하여 용수로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 양수장



펌프, 동력장치, 제어장치, 흡입 및 배출관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지의 용수개량을 목적으로 강이나 하천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양수하는 시설

□ 배수장



펌프, 동력장치, 제어장치, 흡입 및 배출관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수가 불량하거나 홍수시 물이 하천이나 강 또는 호소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물을 배수하는 시설

□ 양배수장



양수와 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양수장의 기능과 배수장의 기능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하천의 용수를 양수하여 수혜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집중호우 또는 홍수시에는 수혜구역에 유입된 우수를 배수로를 통해 집수하여 하천으로 배수하는 시설

□ 취입보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농경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는 시설

□ 집수암거



복류수(하천 바닥이나 모래나 자갈층에 스며있는 물)와 지하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하천의 바닥을 굴착하고 유공관을 매설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

□ 집수정



지하수를 다량으로 취수하기 위해 대수층이 발달한 충적층 또는 미고결암층에 우물통을 설치하고 측벽에 다공집수관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 관 정



지하에 일정한 관(철관, 콘크리트관, PVC관 등)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채수하여 관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

□ 방조제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 시설로, 해안의 조수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거나 간척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공으로 만든 제방 시설

배 수 갑 문



해수와 차단된 지역의 내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갑문시설

2. 평야부 시설

☐ 용수로



관개용수를 농지에 송수 또는 분배하기 위한 수로이며, 수원의 취수시설로부터 시작하여 간선수로, 지선수로 및 필지에 접하는 지거로 설치되어 있음

☐ 배수로



잉여수나 지표수를 배출하기 위한 인공 또는 자연적인 수로를 말함

☐ 암거



도로, 철도, 수로의 밑이나 성토부를 자유수면으로 횡단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용수로에 설치되면 용수암거, 배수로에 설치되면 배수암거라고 함

☐ 수로교



지면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설치하는 수로로 깊은 계곡 저지대 등을 지나갈 때 설치하는 구조물

☐ 잠관



도로, 배수로, 하천 등의 밑을 통과하여 관개용수를 보내기 위한 구조물로서, 물이 가득차게(만관) 되어 내수압을 받는 관체로 구성

☐ 급류공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송수하기 위한 수로 구조물

□ 낙차공



수로의 짧은 거리에서 수위를 안전하게 저하시키고 과잉 유속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 방수문



초과된 유량을 배제하여 수로를 보호 하거나 수로의 물을 비우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 침전물을 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 제수문



유량이 적을 경우 배출구나 분수구에서 특정 수두나 수심을 유지해 줌으로서 수로의 수위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구조물

□ 분수문



용수를 지선 또는 지거로 나누어 주기 위한 구조물

□ 배수문



배수로의 말단 저위부에 설치하는 수문으로 홍수시 외수위가 내수위 보다 높아져서 외수가 지구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열어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

□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농사에 주로 이용되는 길로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로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농로를 기계화경작로라 한다.

참고자료2

수리시설감시원 활동사진

※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본부 기획조정실, 2025. 1. 16.

사 진	활 동
	양·배수장 점검
	저수지 취수탑 점검

사 진	활 동
 A photograph showing two workers in a room with green-painted concrete floors. They are operating two large, green industrial pumps. The pumps are connected to large pipes and have yellow safety covers. A control panel is visible between the pumps. The room has white walls and a ladder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양·배수장 운영
 A photograph showing a worker in a room with white walls and a window. The worker is operating a pump. A large control panel with various gauges and switches is visible on the left. The room has a concrete floor and some equipment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양·배수장 운영

사 진	활 동
 The photograph shows two workers at an outdoor site. One worker, wearing a blue cap and a purple vest, is leaning over a concrete structure. The other worker, wearing a white hard hat and a white shirt, is holding a clipboard and looking at the structure. The structure appears to be a gate or a part of a water control system, with a metal rod and a handle visible. The background shows some greenery and a dirt path.	수문점검
 The photograph shows two workers in safety gear (hard hats and high-visibility vests) standing near a body of water. One worker is holding a clipboard and looking at the water, while the other is holding a blue device, possibly a water level gauge or a similar instrument. The water is calm, and there are some plants and trees in the background.	수문점검

사 진	활 동
	수문조작
	수문조작

사 진	활 동
 A photograph showing three workers in a river. One worker in the foreground is wearing a black long-sleeved shirt, a wide-brimmed hat, and white gloves, and is placing a wooden plank on a concrete structure. Another worker is standing in the water near a weir, and a third worker is further back. The river is murky, and there is a concrete weir structure in the background.	수로관리
 A photograph showing a long, straight concrete path running alongside a river. Two workers are visible on the path, one of whom is using a tool to clear vegetation along the riverbank. The river is calm, and there are some buildings and a bridge visible in the background under a clear blue sky.	수로관리